

#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정 2019. 5.22. 규정 제788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19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는 자문 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총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직 평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및 선출)** ① 평의원회는 1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평의원 : 교학처장, 기획처장
  2. 선출직 평의원 : 교원 5명, 직원 3명, 조교 1명, 학생 2명(학부생 1명, 대학원생 1명), 동문 1명
- ② 선출직 평의원은 구성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 교수회에서 추천한 사람(다만, 당연직 교무회 위원은 제외한다)
  2. 직원 :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조교 : 전체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4. 학생 : 학부학생은 총학생회에서, 대학원생은 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동문 :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로 임명 또는 위촉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교원 · 직원 · 조교 · 동문 : 2년

2.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 1년

② 총장은 평의원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임기만료 7일 전까지 후임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각 구성단위에서는 15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구성단위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수의 평의원을 추천하지 못할 경우, 총장은 해당 구성단위에게 4일 이상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평의원 선출을 요청하되, 그 기간에도 평의원을 추천하지 못하면 총장이 해당 구성단위의 사람 중 지명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자격상실)**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평의원이 소속 구성단위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휴직 및 휴학을 한 경우
3. 다른 대학 또는 기관으로 6개월 이상 파견·출장 경우
4. 당연직 교무회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다만, 교학처장과 기획처장은 제외한다)
5. 본인 의사에 따른 평의원의 직을 사임한 경우
6. 그 밖에 평의원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평의원 과반의 제청과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조(면책)** 평의원은 본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평의원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제3장 임원

**제7조(의장)** ① 평의원회에는 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주재 및 의사 정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은 당연직 평의원이나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④ 의장의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⑤ 의장 유고 시 그 잔여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의장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부의장)** ① 평의원회에는 부의장 1명을 둔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의장의 선출은 의장의 선출방식에 따른다.

④ 부의장의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제9조(간사)** ① 평의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의원이 아닌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평의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 제4장 회의

**제10조(운영)**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총장이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의하며, 1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하여 미리 공지하고, 각 안건마다 서면결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평의원회 간사가 작성하며, 회의 종료 시 출석 평의원 중 서명할 3명을 선정하여 서명하게 한다.

③ 의장은 회의록을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평의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석 및 자료제출)** ① 의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평의원회 출석을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평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14조(개정)** ①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공고 절차 및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내규)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제788호, 2019.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평의원회 소집은 총장이 한다.

②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평의원의 임기는 2021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